

2025학년도 (2026대입) 대학 입학 학교장 추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각 대학의 다양한 입학 전형 유형 중 「학교장 추천 전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규정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침)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1) 교내에 「학교장 추천 전형」추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추천 입학 대상자의 심의 기준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발 방법 중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산출 가능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 (3) 대학이 제시한 선발 방법으로 경합중인 대상자의 선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6조「평가영역별 배점 기준안」에 의거하여 작성한 별표를 기준으로 해당 학생의 추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추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 (1)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 위원은 교감(위원장), 진학담당교사(간사), 3학년 부장, 3학년 담임교사 전원으로 한다.
- (2)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 대상 학생의 추천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3) 추천심의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전형」대상자들이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 (4) 추천심의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의 그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구성 위원 외의 교사를 위촉 위원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

제5조(심의 방법)

- (1)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 교사는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중 당해 대학의 전형 요건을 갖춘 학생임을 파악하여 추천 희망자를 접수한다.
- (2) 대학별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심의한다.
 - 가) 3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는 제3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을 추천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
 - 나)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 희망자의 추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대학별 모집 인원에 준한 인원을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 추천 후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다) 추천 대상자 중 개인적인 사유로 추천 대상자격을 포기하는 자가 있을 경우 포기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결원은 각 대학이 정한 지원 자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순위의 학생으로 충원할 수 있다.
 - 라) 졸업생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다. 단,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원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맞추어 추천할 수 있다.
- (3) 대학별 학교장 추천에 대한 인원 제한이 있으나 경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심의한다.
 - 가) 3학년 담임교사 및 추천 자격 교사가 제 5조 1항과 2항 가)호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을 학교장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 나) 추천위원회는 추천 희망자의 자격 여부를 평가 기준안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원장이 추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 (추천기준)

- (1) 「평가 기준안」에서 제시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점수에 의해 순위를 매기고 대학별 모집 인원수에 따라 선발추천자를 정한다.
- (2) 서류 평가가 없는 전형은 <평가 기준안 1>에 따라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자를 선발한다. 환산 등급은 해당 학교 및 전형의 성적 산출 기준을 따른다.
- (3)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은 <평가 기준안 2>에 따라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자를 선발한다. 교과 성적은 해당 학교 및 전형의 성적 산출 기준을 따른다. 단, 서류 평가에서 교과 종합 평가만을 시행하는 학교는 <평가 기준안 1>에 따라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자를 선발한다. 해당 전형이 별도의 정량화된 성적 산출 기준이 없는 경우 전학기 전교과 평균 등급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을 기준으로 한다.
- (4) <평가 기준안 1>과 <평가 기준안 2>의 모의고사 점수는 3학년 5월, 6월, 7월에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5월, 7월)와 대수능모의평가(6월)를 기준으로 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된 전형만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해당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따르되 탐구 과목을 반드시 2과목 평가하는 경우 탐구 2과목 등급의 평균으로 가정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평가 기준안 1 : 교과 전형의 경우 기준안 >

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 기준	세부점수배점 내용	총점
교과	교과성적	대학에서 요구하는 반영 과목에 의한 성적 산출	석차등급	(11-환산등급)*10	100
기타	모의 고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	5월 최저 충족	1.0점	5
			6월 최저 충족	2.5점	
			7월 최저 충족	1.5점	
합 계					105

< 평가 기준안 2 : 교과 반영 포함 서류 평가가 있는 종합 전형의 경우 기준안 >

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 기준	세부점수배점 내용	점수
교과	교과성적	대학에서 요구하는 반영 과목에 의한 성적 산출	석차등급	(11-환산등급)*10	100
비교과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	5	5
			80~99시간	4	
			60~79시간	3	
			40~59시간	2	
			20~39시간	1	
			0~19시간	0	
	리더십	관련경력 - 최대 5점	전교 학생회장(1년)	1.5	5
			전교 학생회 부회장(1년)	1	
			학급자치회 회장(1학기)	1	
			학급자치회 부회장(1학기)	0.5	
기타	모의 고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	5월 최저 충족	1.0점	5
			6월 최저 충족	2.5점	
			7월 최저 충족	1.5점	
감점	출결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1회 당	-1점 ~ 최대 -5점	0
합 계					115

- * 한 학생당 추천 횟수는 학교별 추천인원이 제한된 경우 3회로 제한한다. 단, 추천 인원이 부족한 경우 추천 희망자의 자격여부를 평가기준에 의해 심의하여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 * 사관학교 등 대학별 선발시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전형의 경우, 지원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합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추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 동점자 순위 기준
평가 기준안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면 3학년 교과성적 등급 평균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해당 대학의 교과성적 산출 기준을 따름.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전과목 등급 평균으로 산출.)
- * 추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에서 제외한다.
 1.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미인정 결석 2회 이상.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한다.)
 2.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교내 징계 기록이 있는 경우.

* 추천 규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및 효력발생)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의 승인 후 시행과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적용) 교과 성적 이외의 대상 학생 적용 기준은 본교 추천대상자 지원접수 개시일 7일 전으로 한다. 단, 징계 항목에 대한 감점은 추천자 심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참고) 작년 2025 대입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 [대학 목록]

연번	대학	전형명	추천가능인원	연번	대학	전형명	추천가능인원
1	가천대	지역균형	무제한	27	성신여대	지역균형	무제한
2	가톨릭대(교과)	지역균형	무제한	28	세종대	지역균형	무제한
3	가톨릭대(종합)	학교장추천	무제한	29	수원대	고교추천	무제한
4	강남대	지역균형	무제한	30	숙명여대	지역균형선발	무제한
5	건국대	KU지역균형	무제한	31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무제한
6	경기대	학교장추천	20	32	아주대	고교추천	무제한
7	경인교대	학교장추천	무제한	33	안양대	학교장추천	무제한
8	경희대	지역균형	5%	34	연세대	추천형	10
9	고려대	학교추천	12	35	울지대	지역균형	무제한
10	광운대	지역균형	무제한	36	이화여대	고교추천	20
11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무제한	37	인천대	지역균형	무제한
12	단국대(죽전)	지역균형선발	무제한	38	인하대	지역균형	무제한
13	대진대	학교장추천	무제한	39	중앙대	지역균형	20
14	덕성여대	고교추천	무제한	40	차의과학대	지역균형선발	무제한
15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8	41	평택대	PTU추천	무제한
16	동덕여대	학생부교과우수자	무제한	42	한경국립대	지역균형선발	무제한
17	명지대	학교장추천	20	43	한국공학대	지역균형	무제한
18	삼육대	학교장추천	무제한	44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20 (캠퍼스별10명)
19	상명대	고교추천	10	45	한국항공대	학교장추천	무제한
20	서강대	지역균형	20	46	한성대	지역균형	무제한
21	서울과기대	고교추천	무제한	47	한양대(서울)	추천형	11%
22	서울교대	학교장추천	3%	48	한양대(에리카)	지역균형선발	무제한
23	서울대	지역균형	2	49	홍익대	학교장추천자	10
24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10	50	DGIST	학교장추천	2
25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무제한	51	GIST	학교장추천	2
26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15	52	KAIST	학교장추천	2